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	보 도 자 료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5. 12. 10(목) 총 17매(본문2)	
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종원, 사무관 김동혁, 주무관 오은숙 • ☎ (44)201-3422, 3423, 3429	
보 도 일 시	2015년 12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0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 3월 12일 시행 시험과목 늘고 시험시기 앞당겨 수험생 대비 필요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와 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박영범)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,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.
 -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(5개 지역)에서 실시되고, 결과는 4월 27일 발표된다.
 -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며, 최종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.
-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*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되었다.

* (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3항)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

-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(5지택일형)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.(영어는 별도기준 충족)
- 한편, 2016년부터는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.
 - 7월(1차), 9월(2차)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'16년부터는 앞당겨져 3월(1차), 7월(2차)에 각각 실시되며, 1차 시험 시행지역에 '대구'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.
 - 또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('14.2.7. 시행)으로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,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(기존: 부동산관계법규)에는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이 포함된다.
- 감정평가사 시험은 '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,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(큐넷, www.q-net.or.kr)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동혁 사무관(☎ 044-201-34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6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11일

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. 최소합격인원

○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: 150명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 분	원서접수 (1,2차 동시접수)	시험장소 공 고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 험	1.25(월) 09:00 ~ 2.3(수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·부산 대구·광주 대전	3.12(토)	4.27(수)
제2차 시 험		6.13(월) 공고	서울·부산	7.2(토)	10.5(수)

※ 제2차 시험 응시자(시험의 일부면제자)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

※ 2016년부터 제1차시험 '대구'지역 확대 시행

※ 경력서류 제출기간 : 2016. 1. 18.(월) 09:00 ~ 1. 29.(금) 17:00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과목(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5조)

구 분	시 험 과 목	시험방법
제1차 시험	① 「민법」 중 총칙,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국유재산법」, 「건축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중 지적에 관한 규정, 「부동산등기법」,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) 수 회계학 ⑥ 영어(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)	객 관 식 5지택일형
제2차 시험	① 감정평가실무 ② 감정평가이론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(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)	주 관 식 논 술 형 (기입형 병행가능)

나. 과목별 시험시간

시험구분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완료	시 험 시 간	문항수	
제1차 시험	1교시	① 민법(총칙, 물권)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	09:00	09:30 ~ 11:30(120분)	과목별 40문항	
	2교시	③ 감정평가 관계 법규 ④ 회계학	11:50	12:00 ~ 13:20(80분)		
제2차 시험	1교시	① 감정평가실무	09:00	09:30 ~ 11:10(100분)	과목별 4문항 (필요 시 증감가능)	
	(중 식 시 간)					
	2교시	② 감정평가이론	12:30	12:40 ~ 14:20(100분)		
	3교시	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	14:40	14:50 ~ 16:30(100분)		

-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·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·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-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만 적용하여 출제
- 2016년부터 ③ 부동산학원론이 1교시에 추가되어, 기존 1교시의 시험시간이 80분에서 120분으로 변경

다. 출제영역

-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value) 게재

4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

- 제한 없음

※ 단, 제2차 시험 발표일('16.10.5) 기준,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나. 결격사유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

- 1) 금치산자·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
- 2)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)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합격자 결정

- 제1차 시험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)
 -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

- 제2차 시험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)
 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(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)
 - ※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(이하 버림)까지 계산

6. 시험의 일부면제

- 가. 2015년도 제26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6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(별도 서류제출 없음)
- 나. 대통령령(시행령 제54조제2항)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1차 시험 면제

법정기관	면제대상 업무	면제대상 기관
1.감정평가법인 2.감정평가사사무소 3.감정평가협회	•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, 연구 등 보조업무 (단순노무 등은 제외)	• 감정평가법인 • 감정평가사사무소 • 한국감정평가협회
4.감정평가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	•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•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·감독 •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	• 국토교통부 : 토지정책관 (구 토지국) 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• 지방국토관리청 : 보상과 • 국토관리사무소 : 운영지원과 (구 국도유지사무소 : 관리과)
	•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	• 감사원 : 좌 업무 감사부서
5.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·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	•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업무	• 시·도 : 좌 업무 담당부서 • 시·군·구 : 좌 업무 담당부서
	•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	• 감사원 : 좌 업무 감사부서
6.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	•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	• 기획재정부 : 국유재산정책과, 국유재산조정과(구 국유재산과)

법정기관	면제대상 업무	면제대상 기관
7.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·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·감독하는 기관	•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·결정	• 행정자치부 : 지방세정책과, 지방세운영과 (구 도세과, 구 시군세과) • 시·도 : 좌 업무 담당부서 • 시·군·구 : 좌 업무 담당부서
	• 기준시가의 조사·결정	• 국세청 및 소속기관 : 재산세 관련과
	• 위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	• 감사원 : 좌 업무 감사부서
8.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기관	•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	•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: 담당부서

7.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

가. 제출기간 : '16.1.18(월) 09:00 ~ 1.29(금) 17:00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

나. 근무기관별 제출서류

○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사무소, 감정평가협회 근무자

-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
-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
-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원,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) 중 선택 1부

○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사무소,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중 부도·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
-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
-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(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)
-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원,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) 중 선택 1부
- ⑤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입증인 신분증 사본

- ※ 서류심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공단양식의 경력 증명서, 사실확인서 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
-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 (단,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)
- ※ 소득금액증명(국세청/세무서)은 원본제출.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근무처 발행)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

○ 한국감정원 근무자

-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③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
- 경력 인정 직급 : 종합직, 일반직, 별정직 (서무원 인정불가)

○ 공무원

-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③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
- ④ 인사기록카드(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) 사본 1부.

※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 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,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 (단,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날인 제출)

다. 제출방법 :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

○ 서류 제출 기관

기관명	주소	우편번호	담당부서	연락처
서울자격시험센터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(휘경동 49-35)	44538	전문자격시험팀	02-2137-0551~9
부산자격시험센터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(금곡동 1977번지)	46519	전문자격시험팀	051-330-1961~4
대구자격시험센터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(갈산동 971-5)	42704	전문자격시험팀	053-580-2351~3
광주자격시험센터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(대촌동 958-18)	54852	전문자격시험팀	062-970-1771~4
대전자격시험센터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(문화동 165)	35000	전문자격시험팀	042-580-9151~5

※ 등기우편 제출 시 '16. 1. 29(금),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봉투에 반드시 "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증" 표기

라. 업무 종사기간 산정

- 경력 산정 기준일 : 제2차 시험 시행일('16. 7. 2)
-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, 각 기간을 합산
-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(5년)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, 경력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16. 7. 2(토) 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

※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

마. 경력서류 제출 면제

- 감정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동일 서류 제출 면제('08~'15년도 제출자)

8. 공인어학성적

가.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

- 기준 점수

시 험 명	TOEFL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IBT				
기준 점수	530	71	700	625	65(level-2)	625

-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

※ 2014. 2. 4 ~ 2016. 2. 3.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

-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·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
-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,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

※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

나. 영어시험성적 제출 방법 :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

-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,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
- 공인어학성적의 위·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,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
<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>

-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6. 3. 7.(월)까지 국가자격 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
-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,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-어학성적제출내역'에서 확인 가능

< 공인어학성적 상시등록제 이용 안내 >

- TOEIC 시험의 경우, 큐넷을 통해 365일 온라인 성적표 제출이 가능합니다.
 - 큐넷 메뉴 : 감정평가사 홈페이지-마이페이지-어학성적 상시등록
 - 온라인으로 제출한 TOEIC 성적 승인처리는 7일 정도 소요되며, 승인된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-마이페이지-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

9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(1·2차 시험 동시 접수)

- 2016. 1. 25(월) 09:00 ~ 2. 3(수) 18:00 [10일 간]
- ※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: 2016. 1. 18(월) 09:00 ~ 1. 29(금) 17:00
- ※ 제2차 시험 응시자(시험의 일부면제자)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

나. 접수방법

○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

<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>

- ‘제1차 시험 면제자’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
 -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
- ‘제1차 시험 재응시자’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
 - 원서접수 시 “재응시자”로 선택하여 접수
 -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(결시 포함)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,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
 -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
(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)

<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 면제자 공통사항 >

- 공단 국가자격시험(www.Q-net.or.kr)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
- 인터넷 원서 접수시 **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**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파일(JPG 파일)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
 - ※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 - 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(전국 자격시험센터)

다. 수수료 납부

- 응시수수료 : 40,000원
-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 - 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
라. 수수료 환불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)

-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- 국토교통부장관(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시행)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
-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

-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
-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- ※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
마. 수험표 교부

-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- 제2차 시험 대상자는 6.13(월) 이후 수험표 재출력(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)

바. 시험시행기관

- 제1차 및 제2차 시험 : 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자격시험센터
 -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
 - 제2차 시험장은 '16. 6. 13(월)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
- ※ 기관별 주소, 전화번호 등은 “7. 서류제출기관” 참조

사. 원서접수 완료(결제완료)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

- 시험의 면제신청, 시험장소,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
- ※ 단, 원서접수 마감('16. 2. 3(수) 18:00)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

10.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

-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)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- ※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11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가. 공개 및 신청기간 : '16. 3. 12(토) 17:00 ~ 3. 18(금) 18:00 <7일 간>

나. 공개 및 신청방법 :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※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

12.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

가. 합격자발표

○ 제1차 시험 : 2016. 4. 27(수) 09:00

○ 제2차 시험 : 2016. 10. 5(수) 09:00

○ 발표방법

-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value) : 60일 간

- 자동응답전화(ARS(1666-0100)) : 4일 간(유료)

나. 기타사항

○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

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합격자	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중 감정평가사 2차 합격자	관련 법령
실무수습 기간 1년	실무수습 기간 1주일	공시법 제23조, 공시법 제26조의2 제1항, 공시법 시행령 제64조의 2

○ 감정평가사 상반기 시행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의 교육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음.

※ 2015년도 제26회 자격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('15.12.16(수)) 후 1월 초 개강

○ 관련 문의 :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연수팀(☎ 02-3465-9905)

13.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

가. 시험 일정 변경

○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구 분	2015년		2016년	
	제1차	제2차	제1차	제2차
시 기	6.27(토)	9.19(토)	3.12(토)	7.2(토)

나. 시험과목 변경
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」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구 분	당 초	변 경
제1차 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법(총칙, 물권) ② 경제원론 ③ 부동산관계법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국유재산법」, 「건축법」,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중 지적에 관한 규정, 「부동산등기법」) ④ 회계학 수 영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민법」 중 총칙, 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국유재산법」, 「건축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중 지적에 관한 규정, 「부동산 등기법」,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) 수 회계학 ⑥ 영어

※ ‘경제학원론’의 경우 종전 ‘경제원론’과 출제범위·내용은 동일함

다. 1차 시험 시행지역 확대

-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1차 시행 시 ‘대구’ 지역이 확대 실시됩니다.

당 초	확 대
서울 · 부산 · 광주 · 대전	서울 · 부산 · <u>대구</u> · 광주 · 대전

14. 수험자 유의사항

가. 제1·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

- 1)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2)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재외동포거소증,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만 허용

3)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4)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5)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
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
6)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)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 기재한 수험자(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)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8)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.

※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,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

하여 가방에 보관(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)

- 9)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)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3)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결과는 전산 자동채점에 따르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

※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

- 4)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(초기화)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.

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
- 5)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, 마킹 착오,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산자동판독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.

다.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제2차 시험 장소는 '16. 6. 13(월) 감정평가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value)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- 2)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,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.)
 - 3)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(초기화)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동 사항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.
- 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- 4)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,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5)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,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합니다.
 - 6) 제2차 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.

★ 감정평가사 자격의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value)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(1644-8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